#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01

발의연월일: 2020. 9. 3.

발 의 자: 강민국·김석기·김영식

한무경 • 박덕흠 • 허은아

金炳旭・서일준・박성민

유의동・양금희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3명 이상의 미성년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 등으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 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자녀 양육자 중 1명의 사망으로 차량의 소유권이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에게 공동상속되는 경우 자동차가 다자녀양육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에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3항).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3항 단서 중 "이전"을 "이전(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② (생 략)	위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
	승)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	③
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	
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	
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	
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항 본	<u>_</u>
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	
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	
자의 배우자에게 <u>이전</u> 하는 경	<u>이전(배우자와</u>
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18세 미만의 자녀가 공동으로
하지 아니한다.	<u> 상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u>.</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